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 감사규정

**Play ON**



TABLE OF CONTENTS	Page
1. 제1장 총칙	2
2. 제2장 내부감사	5
3. 제3장 회원단체 감사	9
4. 제4장 보칙	12
5. [별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제18조, 제28조 관련)	15
6.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16
7.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1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에 따라 협회 사무처 및 정관 제 13조에 따른 시도축구협회와 연맹단체(이하 통칭하여 “회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1.>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의 감사업무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4.21.>

② 감사대상은 협회와 회원단체로 한다. <개정 2026.4.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監査)”란 기관의 업무 및 예산·회계 등 재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監事)”란 협회 정관 제24조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 감사(행정, 회계)를 말한다.
3. “감사인”이란 협회의 감사(監事), 감사담당 직원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감사대상에 따른 구분) 감사는 대상에 따라 협회 사무처에 대해 실시하는 ‘내부감사’와 회원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회원단체 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6.4.21.>

제5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21.>

② 종합감사는 협회 사무처, 시도협회, 연맹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6.4.21.>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사업운영 또는 각종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 6.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7.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한 사항
- 8.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10.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 11.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회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협회 상급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지시가 있거나, 회장 및 협회 비상임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4.21.>

-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 3.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④ 재무감사는 예산·회계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결산감사를 말한다. <신설 2026.4.21.>

⑤ 복무감사는 비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지도조치로서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부정·부패 등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민원사무처리, 근무실태 점검 및 직무감찰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필요 시 실시한다. <개정 2026.4.21.>

제6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독립 원칙)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감사인은 감사대상 단체 또는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제8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 ② 감사인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 ③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단체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 ⑤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21.>

제9조(감사기관) ① 협회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회 내에 상시 또는 비상시 감사기구(이하 “감사반”이라 함)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1.>

- ② 감사반에는 협회 및 회원단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1.>
- ③ 감사 담당 직원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5 조 및 제 9 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대우) ① 감사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및 성과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② 회장은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 담당직원 또는 감사 담당직원이었던 사람에게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 제2장 내부감사

제 11 조(정기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 계획의 수립) 정기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1 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계연도 정기 행정·회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사무처에 전달하여 이를 예고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감사대상 업무
2. 감사반의 구성
3. 감사방법과 일정
4.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 12 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감사반은 감사예정일 7 일전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반, 사전준비사항 등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감사반이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장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 회장은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④ 복무감사의 경우는 본 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13조(감사반의 구성) 감사반은 감사 본인 또는 사무처 내 감사 관련 부서 및 감사업무 보조를 지시 받은 협회 사무처 직원(외부 전문가 포함 가능)로 구성되며, 감사는 사무처에 감사업무를 보조할 직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21.>

제14조(감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수감부서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자료·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1. 업무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감사대상부서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구 및 조회
6.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작성 및 제출 요구
7. 근거문서 사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물건 및 기타 입증 자료 제출 요구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대해 감사대상 부서가 비협조적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은 감사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제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제16조(감사의 기준)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근거

제17조(감사결과보고서)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토록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전달,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진행사항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감사결과 보고, 통보 및 조치요구) ①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30 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정기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결과를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 개월 이내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3. 주요감사내용
4. 처분요구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제명, 해임/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책임 및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⑥ 회장은 징계요구 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1 개월 내에 징계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징계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⑦ 감사인은 내부감사 결과 사무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제19조(감사결과 조치) ① 제18조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분 종류별로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기한 내 통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지연의 경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1. 변상 : 3 개월

2. 징계, 경고, 주의 : 1 개월

3.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 2 개월

②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른 수감부서의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④ 제3항의 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⑤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회장의 재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⑥ 회장은 제17조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불기소하였거나,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 제3장 회원단체 감사

제2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6.4.21.>

1. 감사대상 단체
2. 감사대상 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감사의 주기) 회원단체 감사는 재무분야를 포함하여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감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22조(회원단체 감사의 종류) ① 회원단체에 대한 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20조의 종합감사와 특정업무 및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로 구분한다.

제23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협회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21.>

② 협회는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제24조(감사반의 구성) 회원단체 감사는 감사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25조(준용) 이 규정 14조 내지 17조에 대한 사항은 회원단체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2026.4.21.>

제26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다른 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또는 공인회계법인 등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한다. <개정 2026.4.21.>

제27조(외부기관 수감보고) 회원단체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성명, 감사 또는 수사 목적, 기타 참고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제28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①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수감 회원단체명
2. 감사기간
3. 감사인의 소속, 직위 및 성명
4. 주요감사내용
5. 처분요구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회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종류(제명, 해임/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책임 및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



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 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⑥ 협회는 징계요구 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1 개월 내에 징계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징계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제29조(감사결과 조치) ① 회원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이거나 회원단체의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원단체에 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제2항의 재요구를 받은 회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단체는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④ 회원단체가 조치요구에 대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개월을 초과하여 협회의 재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이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는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회원단체에 대한 평가 또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4장 보칙

제3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4.21.]

제3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본조신설 2026.4.21.]

제3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회원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고, 직권으로 면책결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제33조(진정서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에서 감사 담당 부서로 이첩되거나, 회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나 해당 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제34조(이첩처리) 회장은 제33조의 민원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단체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사·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제35조(조사·점검·확인 방법 등) 감사반은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할 때에는 이 규정의 감사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협회 직원 및 회원단체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회장 및 감사 담당 부서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 담당 부서는 제1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회원단체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4.21.]

제37조(감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 19 조 또는 제 28 조를 위반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27 조를 위반하여 수감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본조신설 2026.4.21.]

제38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회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참여, 조사·분석 및 자문 등을 협회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1.]

부 칙<2015. 3. 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제18조, 제28조 관련)

처분요구 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문책	관계 법령, 관계 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 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 소재지)			
	단 체 명		직위(직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 결과의 내용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p>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축구협회장 귀중</p>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5. 기 타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축구협회장 귀중